

2016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2016. 8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요 약

- [2016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4분기보다 3.0p 높은 70.1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5년 3/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조사치로서 최근 몇 년간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1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45.5로 2/4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장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우려가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반기의 수주실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다음 분기에 그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7%)’가 절실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7%)’가 지적됨. ‘입·낙찰제도의 개선(16%)’과 ‘민간투자 활성화(8%)’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규제완화(0%)’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음.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6.6%)’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됨. 그 다음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15.9%)’이 뒤를 이었는데 이는 종전(2015년 4분기 6.7%, 2016년 1분기 14.8%)보다 더욱 증가한 것임.
- [자금사정지수]는 1분기보다 개선되었지만 다음 분기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49%)’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기관 차입(43%)’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 ‘회사채 발행(3%)’과 ‘사채시장 조달(1%)’, ‘보유자산 매각(1%)’의 응답비율은 극히 적었으며 ‘상생협력펀드 활용(0%)’의 응답은 없었음.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크게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지난 분기보다 다소 하락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3일, 하도급공사 40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형태]는 ‘전액 현금(78%)’이 대부분이었으며 ‘현금+어음(14%)’의 응답비율도 적지 않았음.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더욱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응답업체의 73%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보유(53%)’의 응답비율이 더욱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에 드러나지 않던 ‘사채시장 할인(3%)’이란 응답이 나타남.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1분기보다 소폭 상한 반면 [인건비지수]는 크게 하락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1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재비지수]는 종전보다 크게 하락함.
- [이중계약서 작성]은 4%가,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도 4%, [하도급 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1%가 경험했다고 응답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도 최근 5개 분기 중 가장 높은 88%였으며,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대부분 '1~2회'였으나 지난번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4회 이상(9%)' 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1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비율은 54%임.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강요받은 경우는 3%,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지난 조사결과와 비슷한 24%로 나타나 동 사안의 심각함이 다시금 부각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하도급계약 체결시(52%)'와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33%)'가 다수였고,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업체가 총 69%였음.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22%)'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19%)'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았음.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96%가,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96%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에는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39%)'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37%)'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집계됨. 그 다음으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24%)'가 지목됨.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모든 응답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응답업체의 21%가 경험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로는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42%)'가 가장 많았고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음.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으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7%가 경험함.
-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는 본문의 <표-28>에 정리됨.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 조사를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 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를 활용함.
- 원·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2. 조사내용

- 2016년도 2/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11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으로 구성됨.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289명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자계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이용함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96사(33.2%), 지방권 업체는 193개사(66.8%)로 구성되며, 기업규모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 중 77개사(유효회수율: 26.6%)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2/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에 활용됨.

<표-1> 설문조사 내용

| 구 분 | 조 사 내 용 |
|----------------|---|
| 건설경기(전문건설업) 전망 | ①경기전망 ②경기활성화 대책 |
|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 ③기업경영 애로사항 ④자금사정 전망 ⑤자금조달 방법 |
| 공사수주 | ⑥공사수주 전망 |
| 공사대금 수령 | ⑦대금수령 소요일 ⑧수령형태 ⑨수금전망 ⑩수령어음 평균만기일 ⑪어음의 현금화 방법/할인율 |
| 하도급 불공정거래 | ⑫이종계약서 작성경험 ⑬불공정 특약조항 유무 ⑭부당감액 피해사례 ⑮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유무 ⑯전자 입찰시 재입찰 ⑰하자담보책임기간 ⑱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령 ⑲지급보증서 미수령 사유 ⑳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 지정 ㉑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초과강요 ㉒하자보수보증율 초과강요 ㉓무리한 하자보수요구 ㉔공상처리/비용 |
| 기술·기능인력 수급 | ⑮기술·기능인력 수급전망 ⑮인건비 전망 |
| 자재·장비 수급 | ⑮자재·장비 수급전망 ⑮자재가격 전망 ⑮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 ⑮발주자/원도급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⑮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⑮시공단계 ⑮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 단계 ⑮유지관리단계 ⑮자재·장비업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⑮기타 건설공사 수행 관련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⑮지급보증서 교부시점 ⑮원사업자 규모 ⑮미교부사유 ⑮변경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 교부 ⑮어음만기일에 따른 지급보증서, ⑮지급보증서 교부율 상황 |
| 계약이행보증 | ⑮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교부시점 ⑮특정 보증기관 강요 ⑮특정 보증기관 강요사유 ⑮현장설명서 특기조건의 전액보상 규정 |
| 건설기계보증 | ⑮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⑮지급보증서 미발급사유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⑮계약이행보증서 미수령사유 ⑮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점 |

II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분석

1. 2016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6년 3/4분기 전망

- [2016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1/4분기보다 3.0p 높은 70.1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5년 3/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조사치로서 최근 몇 년간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2>.
- 지난 1분기에 나타났던 지수의 개선은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이 지나면서 발생한 계절적인 반등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준의 평가치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였는데 이번 조사결과가 그같은 종전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의 건축물 인허가면적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는 특히 아파트의 인허가면적이 큰 폭의 증가폭을 기록함. 더구나 상반기에 착공된 주거용 건물면적도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더해 상반기의 건설수주 역시 증가세를 보임.
- 다만 지역적으로는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공공물량의 조기발주가 무리없이 진행된 지역들에서는 건설수주액의 증가가 급증한 반면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의 감소가 보고되는 상황임. 하지만 하반기에도 정부의 재정집행계획에 따른 공공공사물량의 공급이 지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참고로 건설투자의 경우 각 기관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2분기의 건설투자가 1분기를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금년들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 등의 호황이 이를 뒷받침함. 건설투자증가 역시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으며 수도권과 제주·충청 지역들이 상위지역으로 지목됨.

<표-2>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추이 및 전망

| | 2015년 1/4분기 | 2015년 2/4분기 | 2015년 3/4분기 | 2015년 4/4분기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
| 경기실적(BSI) | 67.1 | 72.5 | 64.6 | 58.9 | 67.1 | 70.1 | 45.5(전망) |

- [201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45.5로 2/4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우려가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상반기의 실적에 비추어볼 때 다음 3/4분기에 그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2>.
- 정부의 이번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SOC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그리고 일부에서는 상반기에 건설공사의 수주건수와 수주액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의 발주물량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공공기관들의 건설관련 재정집행이 통상 연말에 집중된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다음 3분기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우려에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
- 더구나 지난 상반기동안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 모두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건설투자증가율 등에 대한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해왔음. 여기에 조선과 해운 등 국내 주요 산업현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건설업에서도 적극적인 공사수주를 통한 매출증대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임.
-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들의 가격이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골재같은 일부 자재의 경우 현재의 수급불안정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정도임. 이러한 수요증가는 주로 그간의 주택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곧 기초자재만이 아닌 내·외장재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이같은 현장상황과 함께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건축물의 인허가면적 등이 적지 않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다음 3분기에 갑작스런 수주절벽 같은 돌발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47%)’가 절실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는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7%)’가 지적됨. ‘입·낙찰제도의 개선(16%)’과 ‘민간투자 활성화(8%)’가 그 뒤를 이었으며 ‘부동산규제완화(0%)’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음 <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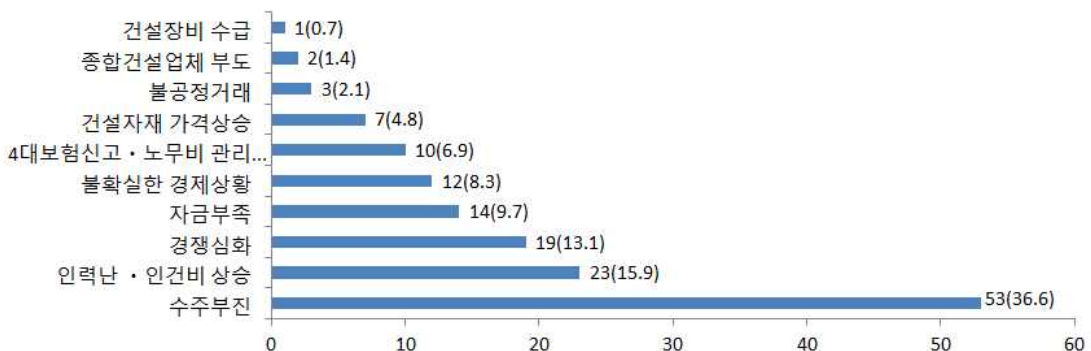
<표-3>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공공발주 확대 | 26 (38) | 22 (34) | 22 (24) | 19 (25) | 21 (27) |
| 민간투자 활성화 | 4 (6) | 7 (11) | 10 (11) | 2 (3) | 6 (8) |
| 부동산 규제 완화 | 2 (3) | 0 (0) | 0 (0) | 3 (4) | 0 (0) |
| 입·낙찰제도 개선 | 9 (13) | 10 (15) | 21 (23) | 11 (14) | 13 (16) |
| 지역경제 활성화 | 27 (39) | 22 (34) | 38 (41) | 41 (54) | 37 (47) |
| 기 타 | 1 (1) | 4 (6) | 2 (2) | 0 (0) | 2 (3) |

2.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6.6%)’ 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됨. 그 다음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15.9%)’ 이 뒤를 이었는데 이는 종전(2015년 4/4분기 6.7%, 2016년 1/4분기 14.8%)보다 줄곧 증가한 비율임 [그림-1].
- 그 다음으로는 경쟁심화(13.1%), 자금부족(9.7%), 불확실한 경제상황(8.3%),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6.9%), 건설자재 가격상승(4.8%), 불공정거래(2.1%), 종합건설업체의 부도(1.4%), 건설장비수급(0.7%)의 순으로 나타남²⁾.

(단위 : 응답수, %)



[그림-1]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6년 2/4분기)

2) ‘현장관리’와 ‘건설장비수급’ 항목은 2014년 1/4분기 조사부터 추가됨

- [자금사정(자금조달)지수]는 74.0(57.9→74.0점)으로 2016년 1/4분기보다 개선되었으나 다음 분기에는 59.7로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4>.
- 자금조달지수는 1분기보다 개선되었으나 역시 작년 2분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이번 조사결과는 그간의 공사물량증대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제기하는 공사대금문제는 대개 정산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임. 풀이하면 건설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수령하는 기성금을 공사자금의 원활한 조달로 받아들이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임.

<표-4> 전문건설업 자금조달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5년 1/4분기 | 2015년 2/4분기 | 2015년 3/4분기 | 2015년 4/4분기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
| 자금조달 | 62.9 | 78.3 | 69.2 | 63.3 | 57.9 | 74.0 | 59.7(전망) |

- [자금조달방법]은 지난 분기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대표자 개인자금 (49%)’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기관 차입(43%)’의 비중이 크게 늘어남. ‘회사채 발행(3%)’과 ‘사채시장 조달(1%)’, ‘보유자산 매각(1%)’의 응답비율은 극히 적었으며 ‘상생협력펀드 활용(0%)’의 응답은 없었음 <표-5>.

<표-5>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조달방법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금융기관 차입 | 27 (39) | 23 (37) | 29 (30) | 21 (28) | 34 (43) |
| 사채시장 조달 | 1 (1) | 2 (3) | 0 (0) | 1 (1) | 1 (1) |
| 회사채 발행 | 4 (6) | 1 (2) | 3 (3) | 1 (1) | 2 (3) |
| 상생협력펀드 활용 | 0 (0) | 0 (0) | 0 (0) | 0 (0) | 0 (0) |
| 대표자 개인 자금 | 30 (43) | 35 (56) | 54 (56) | 47 (63) | 39 (49) |
| 보유자산 매각 | 1 (1) | 1 (2) | 3 (3) | 1 (1) | 1 (1) |
| 기타 | 6 (9) | 1 (2) | 8 (8) | 4 (5) | 2 (3) |

3. 공사수주와 공사대금 수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68.8(42.1점→68.8점)로 1/4분기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하도급은 54.5(59.2점→54.5점)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6>.
 - 작년 2분기에 65.2였던 원도급 공사물량지수는 그간 큰 폭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전년동기 수준으로 반등한 것인데, 이는 종합건설업보다 상대적으로 건설경기에 대한 반응이 늦게 나타나는 전문건설업의 한 특징으로도 볼 수 있음.
 - 그간의 등락폭이 컸던 원도급지수와 달리 하도급 공사물량지수는 다소의 등락이 있긴 하지만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로 일정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수주를 원·하도급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본다면 알아챌 수 없는 것임.
 - 공사물량지수의 평가는 종전처럼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기업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모두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원도급은 건축중심업체와 토목중심업체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하도급은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높게 나타남.
- 2016년 3/4분기의 공사물량지수 전망은 원도급은 2/4분기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하도급은 유사할 것으로 조사됨.
 - 이는 다음 분기의 전망에서도 지금까지의 경향과 동일하게 원도급 공사물량지수의 등락폭이 크게 나타난 것임. 하지만 이는 주로 공공공사물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공사수주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이므로 선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다음 3분기의 실제 결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6>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5년 1/4분기 | 2015년 2/4분기 | 2015년 3/4분기 | 2015년 4/4분기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
| 원도급 | 71.4 | 65.2 | 60.0 | 54.4 | 42.1 | 68.8 | 49.4(전망) |
| 하도급 | 61.4 | 59.4 | 55.4 | 58.9 | 59.2 | 54.5 | 55.8(전망) |

-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통상적으로 원도급공사가 23일, 하도급공사가 40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됨 <표-7>. [공사대금의 수령 형태]는 ‘전액 현금(78%)’ 이 대부분이었으며 ‘현금+어음(14%)’ 의 응답비율도 적지 않았음. ‘전액 어음(5%)’ 과 ‘어음대체결제수단(2%)’ 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음 <표-8>.

<표-7>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 (일)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원도급 공사 | 20 | 24 | 23 | 24 | 24 | 23 |
| 하도급 공사 | 37 | 47 | 42 | 42 | 43 | 40 |

<표-8>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전액 현금 | 40 (63) | 36 (65) | 62 (71) | 59 (82) | 51 (78) |
| 전액 어음 | 2 (3) | 1 (2) | 3 (3) | 1 (1) | 3 (5) |
| 현금 + 어음 | 9 (14) | 6 (11) | 11 (13) | 7 (10) | 9 (14) |
| 어음대체결제수단 | 0 (0) | 0 (0) | 1 (1) | 1 (1) | 1 (2) |
| 기타 | 13 (20) | 12 (22) | 10 (11) | 4 (6) | 1 (2) |

- [공사대금수금]은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80.5(81.6점→80.5점)였으나 다음 3/4분기에는 72.7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9>.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2015년 1분기를 고점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치 역시 작년 2분기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임. 이는 금년 들어 호조세를 보여온 건설경기가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금을 통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질적인 상황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표-9>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금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5년 1/4분기 | 2015년 2/4분기 | 2015년 3/4분기 | 2015년 4/4분기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
| 원·하도급 전체 | 90.0 | 87.0 | 86.2 | 80.0 | 81.6 | 80.5 | 72.7(전망) |

-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은 ‘30일 이하(46%)’ 와 ‘31~60일(27%)’ 의 합계가 73%로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어음수령시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61~90일(22%)’ 이라는 응답비율도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임. 하도급공사에서의 평균만기일은 ‘30일 이하(16%)’ 와 ‘31~60일(57%)’의 비율이 총 73%로 1/4분기보다 늘어났으며 ‘61~90일(24%)’ 의 비율은 지난 분기와 동일함 <표-10, 표-11>.

<표-10> 원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30일 이하 | 22 (58) | 19 (59) | 27 (57) | 11 (33) | 17 (46) |
| 31~60일 | 11 (29) | 7 (22) | 15 (32) | 15 (45) | 10 (27) |
| 61~90일 | 4 (11) | 6 (19) | 4 (9) | 5 (15) | 8 (22) |
| 91~120일 | 0 (0) | 0 (0) | 1 (2) | 0 (0) | 1 (3) |
| 120일 초과 | 1 (3) | 0 (0) | 0 (0) | 2 (6) | 1 (3) |

<표-11> 하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30일 이하 | 13 (33) | 9 (28) | 10 (19) | 6 (18) | 6 (16) |
| 31~60일 | 16 (41) | 13 (41) | 32 (62) | 16 (47) | 21 (57) |
| 61~90일 | 8 (21) | 6 (19) | 5 (10) | 8 (24) | 9 (24) |
| 91~120일 | 2 (5) | 4 (13) | 4 (8) | 2 (6) | 1 (3) |
| 120일 초과 | 0 (0) | 0 (0) | 1 (2) | 2 (6) | 0 (0) |

-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일까지 보유(53%)’ 한다는 응답이 최근 5개 분기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중은행 할인(24%)’ 의 비율은 1/4분기와 유사함. ‘제2금융권 할인(0%)’ 은 없었으며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9%)’ 한다는 응답도 일부 나타남. 이번 조사에서 유의할 점은 종전 조사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사채 시장 할인(3%)’ 의 응답이 나왔다는 것임 <표-12>.

<표-12> 수령어음의 현금화 방법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시중은행 할인 | 4 (12) | 2 (8) | 6 (13) | 8 (26) | 8 (24) |
| 제2금융권 할인 | 0 (0) | 0 (0) | 0 (0) | 1 (3) | 0 (0) |
| 사채시장 할인 | 0 (0) | 0 (0) | 0 (0) | 0 (0) | 1 (3) |
|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 | 2 (6) | 3 (12) | 7 (16) | 5 (16) | 3 (9) |
| 만기일까지 보유 | 8 (24) | 4 (15) | 14 (31) | 13 (42) | 18 (53) |
| 기타 | 19 (58) | 17 (65) | 18 (40) | 4 (13) | 4 (12) |

4. 기술·기능인력 및 자재·장비 관련

- [기술·기능인력 수급과 인건비지수]는 인력수급지수는 84.4(81.6점→84.4 점)으로 1/4분기보다 소폭 상승, 인건비지수는 46.8(55.3점→46.8점)로 크게 하락했으나 이는 작년 4/4분기와 유사한 수준임³⁾ <표-13>.
- 이번 조사에서 인력수급지수가 1분기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음. 소규모 현장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강화를 들 수 있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별 건설경기에 따른 인력수요의 차이가 더 큰 이유임⁴⁾.
- 인건비도 건설자재와 함께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원가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며 특히 모든 공정을 자동화하기 어려운 건설업에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변함없이 지적하는 사안임. 이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공사마다 적정공사비가 책정되는 환경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마다 공사수주물량 등의 차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이 느끼는 건설경기가 다른 것처럼 인력수요와 인건비 역시 이같은 지역적 편차를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음.

3) 인력수급지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인건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4) 2분기에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 등은 인력수급보다는 건설장비수급의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고려치 않음

<표-13>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5년 1/4분기 | 2015년 2/4분기 | 2015년 3/4분기 | 2015년 4/4분기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
| 인력수급 | 81.4 | 79.7 | 100.0 | 76.7 | 81.6 | 84.4 | 81.8(전망) |
| 인건비 | 54.3 | 52.2 | 61.5 | 44.4 | 55.3 | 46.8 | 51.9(전망) |

- [자재·장비수급과 자재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16년 2/4분기의 자재수급지수⁵⁾⁶⁾는 98.7(98.7점→98.7점)로 1/4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재비지수는 55.8(64.5점→55.8점)로 전 분기보다 크게 하락함 <표-14>.
 - 건설자재의 수요증가는 이미 지난 1분기에도 지적된 문제였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된 이번 조사결과는 쉽게 납득할 수 있음. 철근과 시멘트 같은 기본자재는 전 분기에도 이미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출하량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2분기에도 동일하게 이어졌을 것임. 콘크리트 파이프와 레미콘, 골재 등의 다른 자재들 역시 비슷한 상황임.
 - 마찬가지로 건설자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재가격도 함께 상승해왔으며 이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응답을 통해 이번 자재비지수의 하락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음 3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표-14> 전문건설업 자재·장비 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및 전망

| | 2015년 1/4분기 | 2015년 2/4분기 | 2015년 3/4분기 | 2015년 4/4분기 | 2016년 1/4분기 | 2016년 2/4분기 | 2016년 3/4분기 |
|---------|----------------|----------------|----------------|----------------|----------------|----------------|------------------|
| 자재·장비수급 | 95.7 | 92.8 | 104.6 | 96.7 | 98.7 | 98.7 | 105.2(전망) |
| 자재비 | 49.4 | 63.8 | 69.2 | 61.1 | 64.5 | 55.8 | 62.3(전망) |

- 5) 동 항목은 2013년까지 100~120 사이의 조사치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90대로 하락해 그 추세를 이어옴
- 6) 통상 자재수급지수는 자재비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건설환경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조정받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자재비는 공사원가상승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함

5. 하도급 불공정거래

- [이중계약서 작성경험]은 응답업체의 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5>.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도 4%가 경험한 것으로 <표-16>,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1%의 업체가 겪은 것으로 조사됨 <표-17>.
- 이들 사안들은 건설현장에서 마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당국 등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

<표-15> 이중계약서 작성경험 유무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경험있음 | 1 (1) | 1 (1) | 4 (7) | 7 (8) | 7 (10) | 3 (4) |
| 경험없음 | 66 (99) | 65 (99) | 54 (93) | 79 (92) | 65 (90) | 74 (96) |

<표-16>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유무⁷⁾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경험있음 | 4 (6) | 2 (3) | 4 (7) | 9 (10) | 6 (8) | 3 (4) |
| 경험없음 | 63 (94) | 63 (97) | 54 (93) | 77 (90) | 65 (92) | 73 (96) |

<표-17>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경험있음 | 3 (5) | 4 (6) | 8 (14) | 14 (16) | 8 (12) | 8 (11) |
| 경험없음 | 62 (95) | 58 (94) | 50 (86) | 71 (84) | 61 (88) | 68 (89) |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용'한다는 응답이 88%, '미사용'은 4%, '수정·변경 사용한다는 응답비율'은 8%로 조사되어 최근 5개 분기 중 가장 높은 개선수준을 나타냄. 하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기 전까지는 정책당국을 비롯한 업계 안팎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표-18>.

7) 본 조사문항은 2014년 3분기부터 추가된 것임

<표-18> 표준하도급계약시 사용여부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사용 | 51 (80) | 46 (84) | 72 (83) | 53 (78) | 65 (88) |
| 미사용 | 1 (2) | 2 (4) | 7 (8) | 9 (13) | 3 (4) |
| 수정·변경사용 | 11 (17) | 4 (7) | 5 (6) | 5 (7) | 6 (8) |
| 기타 | 1 (2) | 3 (5) | 3 (3) | 1 (1) | 0 (0) |

-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1회가 39%, 2회가 21%로 1~2회가 다수 응답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지난 1/4분기의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4회 이상(9%)’이라는 응답업체가 조사됨 <표-19>.

<표-19> 전자입찰 재입찰 경험횟수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1회 | 22 (67) | 13 (35) | 16 (62) | 16 (43) | 12 (48) | 13 (39) |
| 2회 | 6 (18) | 9 (24) | 7 (27) | 10 (27) | 6 (24) | 7 (21) |
| 3회 | 2 (6) | 5 (14) | 1 (4) | 3 (8) | 0 (0) | 1 (3) |
| 4회 이상 | 0 (0) | 0 (0) | 0 (0) | 0 (0) | 2 (8) | 3 (9) |
| 기타 | 3 (9) | 10 (27) | 2 (8) | 8 (22) | 5 (20) | 9 (27) |

- [하도급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정기간보다 길다’ 는 응답이 15%, ‘법정기간과 동일’ 하다는 응답은 1/4분기보다 다소 늘어난 84% 였음 <표-20>.

<표-20> 하자담보책임기간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법정기간보다 길다 | 10 (16) | 9 (17) | 20 (25) | 14 (22) | 11 (15) |
| 법정기간과 동일 | 51 (80) | 42 (79) | 57 (71) | 49 (78) | 61 (84) |
| 기타 | 3 (5) | 2 (4) | 3 (4) | 0 (0) | 1 (1)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령했다는 응답비율은 54%였으며 <표-21>, [미수령 사유]로는 ‘하도급대금 직불현장(50%)’ 와 ‘이유를 알 수 없다(34%)’ 라는 2개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표-22>.

<표-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여부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있다 | 35 (56) | 39 (63) | 33 (60) | 34 (43) | 24 (38) | 40 (54) |
| 없다 | 28 (44) | 23 (37) | 22 (40) | 45 (57) | 39 (62) | 34 (48) |

<표-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수령 사유 (건, %)

|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수급인이 보증면제업체 | 1 (4) | 6 (15) | 3 (6) | 4 (9) | 3 (8) |
| 하도급대금 직불현장 | 17 (61) | 19 (46) | 22 (41) | 21 (45) | 19 (50) |
|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 0 (0) | 2 (5) | 2 (4) | 1 (2) | 3 (8) |
| 이유모름 | 10 (36) | 14 (34) | 27 (50) | 21 (45) | 13 (34) |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특정업체인 서울보증보험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업체는 3%였으며 <표-23>.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 초과]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11% <표-24>,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율 5% 초과]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7%였음 <표-25>.

<표-23> 서울보증보험 강요 유무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있다 | 6 (10) | 8 (13) | 2 (4) | 16 (20) | 9 (14) | 2 (3) |
| 없다 | 55 (90) | 55 (87) | 52 (96) | 66 (80) | 57 (86) | 72 (97) |

<표-24> 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10%초과 강요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있다 | 0 (0) | 1 (2) | 1 (2) | 6 (7) | 3 (5) | 8 (11) |
| 없다 | 61 (100) | 62 (98) | 53 (98) | 76 (93) | 62 (95) | 65 (89) |

<표-25>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있다 | 1 (2) | 4 (6) | 1 (2) | 6 (7) | 5 (7) | 5 (7) |
| 없다 | 60 (98) | 59 (94) | 52 (98) | 76 (93) | 62 (93) | 68 (93) |

-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는 지난 조사결과와 비슷한 24%로 나타나 동 사안의 심각함이 다시금 부각됨 <표-26>. [산업재해발생시 공상처리 경험]은 4%였음 <표-27>.

<표-26>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있다 | 11 (18) | 8 (13) | 6 (11) | 15 (18) | 16 (25) | 17 (24) |
| 없다 | 51 (82) | 54 (87) | 47 (89) | 70 (82) | 49 (75) | 55 (76) |

<표-27>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경험 (건, %)

| | '15. 1분기 | '15. 2분기 | '15. 3분기 | '15. 4분기 | '16. 1분기 | '16. 2분기 |
|----|----------|----------|----------|----------|----------|----------------|
| 있다 | 0 (0) | 1 (2) | 0 (0) | 3 (4) | 4 (6) | 3 (4) |
| 없다 | 61 (100) | 61 (98) | 53 (100) | 79 (96) | 66 (94) | 66 (96)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하도급계약 체결시’가 가장 많은 52%,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33%,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1%인 것으로 조사됨 <표-28>.

<표-28>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시점 (건, %)

| | '16. 2분기 | |
|---------------------|-----------|-------------|
| 하도급계약 체결시 | 17 | (52) |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11 | (33) |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 | (3) |
|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초과 | 0 | (0) |
| 기 타 | 4 | (12)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 공능력평가순위를 기준으로 ‘1~30위 업체’가 35%, ‘31~100위 업체’가 17%, ‘101~200위 업체’가 17%로서, 지급보증서를 미교부받았다는 전체 응답의 69%가 시평 200위 이내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표-29>.

<표-29>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 (건, %)

| | '16. 2분기 | |
|----------------|----------|------|
| 시평 1~30위 업체 | 8 | (35) |
| 시평 31~100위 업체 | 4 | (17) |
| 시평 101~200위 업체 | 4 | (17) |
| 기 타 | 7 | (30) |

- [교부대상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가 22%, ‘계약이행보증 미제출’이 11%,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지만 실제 교부가 안됨’이 30%, ‘원사업자와 합의’가 30%,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이 19%로 나타남 <표-30>.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사업자와 합의’했다는 응답으로서 이것이 전문건설업체의 자발적인 합의인지, 원도급자의 이익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등이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표-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인데도 교부받지 못한 이유 (건, %)

| | '16. 2분기 | |
|-----------------------------|----------|------|
| 원사업자의 교부거부 | 6 | (22) |
| 당사의 계약이행보증 미제출 | 3 | (11) |
| 지급보증서는 발급, 실제 교부가 안됨 | 8 | (30) |
| 원사업자와 합의 | 8 | (30) |
|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 | 5 | (19) |
| 기 타 | 6 | (22) |

-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96%의 응답업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31>. 이는 곧 일선 현장의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결과로도 판단할 수 있음.

<표-31> 지급보증서 교부 뒤,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여부 (건, %)

| | '16. 2분기 | |
|-----|----------|------|
| 있 다 | 1 | (4) |
| 없 다 | 27 | (96) |

-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응답업체의 96%가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표-32>. 이를 앞서의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와 연계시켜 본다면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떠한 경영환경에 처해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음.

<표-32> 어음(하도급대금)의 만기일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초과시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의 교부여부 (건, %)

| | '16. 2분기 | |
|-----|----------|------|
| 있 다 | 1 | (4) |
| 없 다 | 27 | (96)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39%)’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37%)하는 방법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집계됨. 그 다음으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24%)’가 지목됨 <표-33>.

<표-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을 높이는 방법 (건, %)

| | '16. 2분기 | |
|----------------------------------|----------|------|
|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 15 | (39) |
|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 9 | (24) |
|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 | 14 | (37) |
| 기 타 | 0 | (0) |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모든 응답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이루어졌다고 답변함 <표-34>. 이같은 결과는 건설현장에서 행해져 온 그간의 관행들이 원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에 기인함.

<표-34>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한 시점 (건, %)

| | '16. 2분기 | |
|-----------|----------|-------|
| 하도급계약 체결시 | 46 | (100) |
| 없 다 | 0 | (0) |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응답업체의 2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동 문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서울보증보험을 지정한 경우를 조사함) <표-35>.

<표-35>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건, %)

| | '16. 2분기 | |
|-----|----------|------|
| 있 다 | 11 | (21) |
| 없 다 | 41 | (79) |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로는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 라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 가 33%였음.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 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음 <표-36>.

<표-36>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 (건, %)

| | '16. 2분기 | |
|--------------------------------|----------|------|
|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 | 11 | (33) |
|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 | 6 | (18) |
|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 | 14 | (42) |
| 기 타 | 2 | (6) |

-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응답업체의 7%가 경험했다고 답함에 따라 아직까지도 이같은 불공정관행이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표-37>.

<표-37> 하도급계약시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 등에 전액보상(위약벌)으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건, %)

| | '16. 2분기 | |
|-----|----------|------|
| 있 다 | 3 | (7) |
| 없 다 | 41 | (93) |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종합한 결과 <표-38>과 같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 이외에도 간접비 미지급, 구두지시 후 미반영 등 정당한 공사대금의 정산에 대한 사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표-38>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 (2분기 집계)

| 불공정거래의 발생단계 | 불공정거래 사례 |
|----------------|---|
| 발주자/원도급자 |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 적정단가 미적용 |
| 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 -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 |
| 시공단계 | - 구두지시 후 공사비 하향조정 및 감액 - 작업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지연 및 부당한 공사비 삭감 |
|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 - 정산지연 또는 기성수령지연 - 간접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
| 유지관리 단계. | - 무리한 하자보수기간 설정 - 전문건설업체의 책임이 아닌 하자보수요구 |
| 기타 | - 원도급자 현장대리인의 무리한 접대강요 |